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김원섭 의원 외 13인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의자: 김원섭·김근한·김낙관·김민성  
김영태·김재우·박교상·신용하  
양진오·이정희·이지연·정지원  
추은희·허민근 의원(14인)

###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나.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제31조

나. 부서검토: 체육시설관리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등 조치)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확인
3. 시설 내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훈련 및 배치
4.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 비치
5. 탑승 전 사용자에게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안전교육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를 준용한다.</p>	<p>제14조(보험 등의 가입)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p>
<p>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15조(안전점검 등 조치)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의 안전점검</li> <li>2.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확인</li> <li>3. 시설 내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훈련 및 배치</li> <li>4.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 비치</li> <li>5. 탑승 전 사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안전교육</li> </ol>
<p>&lt;신 설&gt;</p>	<p>제16조(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1.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협한 경우

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 제17조 (생략)

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 관계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제43조(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항목·시기·절차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3.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6. 비상구조선(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치

②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2.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4.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5. 제26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8. 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험등의 가입)**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 의무
4.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 의무
5. 법 제4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 제한 등의 준수 의무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

로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체육시설관리과

조 례 명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li><li>▪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제31조</li></ul></li></ul>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li><li>○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li></ul>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당 개정안은 안점점검 등 조치와 이용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li></ul>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대효과 :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li><li>○ 소요예산 : 2024년 기 편성된 예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li><li>▪ 기존 예산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li><li>* 「2023년도 법제업무편람」 50p 비용추계서 첨부기준 참조</li></ul></li><li>○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li></ul>	

